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국회통과

- 부정수급 제재강화,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보조금관리법”)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※ 이형석 의원(더불어민주당, 광주 북구을)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과 이명수 의원(국민의 힘, 충남 아산 갑)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됨

□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,

○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·교부절차·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.

※ 지방재정법 12개 조문 → 지방보조금관리법 7장 40개 조문

□ 지방보조금관리법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□ 첫째,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,

○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,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.

□ 둘째,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였는데,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

○ 또한,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부정수급 유형별 벌칙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.

※ (사례)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:

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→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○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,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.

□ 셋째,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○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·공모·교부·집행·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·정보화하여,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.

○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이 '23년 1월 개통되면 지방보조금의 대국민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>

- 구축기간 : 2020.12~2023.12 (지방보조금포털 '23년 1월 개통)
- 구축비 : 1,017억 (국비 439억, 지방비 578억)
- 추진내용 : 보조금 관련정보 통합관리 /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장치 도입을 통한 보조금 중복·부정수급 방지 / 전자증빙에 기반한 온라인 정산 도입 / 개인별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, 운영현황 및 성과공개

□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,

○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·개선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참고 1 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제재 강화방안

[사전 예방]

- 검사 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 (29조)
- 외부감사인 검증·회계감사 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의 검증을 받거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 (17, 18조)

[사후 제재]

-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—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(12조)
- 지방보조금 반환(지방보조사업자·환수(지방보조금수령자) —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 (31조) /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(34조)
-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등 —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일시정지 또는 상계 (33조)
-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—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, 체납 시 가산금 징수(최대 5%) (35조)
-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—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(32조)
- 명단 공표 —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(30조)
- 강제 징수(반환금 등 미납 시) — 반환금 등 미납자에 압류 등 강제징수,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(36조)
- 신고포상금(신고 등이 있을 시) —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(25조)

참고 2 —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

□ 목적

- 지방보조사업 공모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관리 전(全) 과정 전자화
- 보조금 이중·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자격검증 체계 구축
- 보조사업자 대민 접근성·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방보조금포털 구축

<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>

- 구축기간 : 2020.12~2023.12 (지방보조금 '23년 개통 / 지방재정 '24년 개통)
- 구축비 : 1,017억 (국비 439억, 지방비 578억)
- 추진내용 : 지방재정관리 전 과정 고도화 및 지방보조사업관리 전자화

□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주요내용

- (보조사업관리) 보조사업자 공모, 보조금 교부·지출·정산·반납의 보조금업무 전 과정 온라인화 및

보조금 실시간 운영관리

- (부정수급방지)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온라인 자격검증, 자치단체간 유사 중복사업 확인 및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징후 모니터링 실시
- (보조금대민포털) 민간보조사업자 온라인 업무수행을 위한 포털서비스 구축과 맞춤형 보조사업, 통계 등 정보 제공

☐ 향후계획

- 조달청공고('20.11), 구축('20.12~'23.12) ※ 보조금일부오픈 '22.8.